

學校 保健要員(養護教師) 確保의 緊急性

柳 斗 秀

韓國學校保健協會 常務理事

學校 保健事業은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서 특히 6歲부터 18歲까지(國民校~高等學生)는
사람의 全生涯期間中 成長過程의 速度가 가장
빠른 時期에 處해 있으며 920萬이 넘는 面大한
學生人口의 健康上으로나 나아가서는 全體國民
保健向上을 위하여 國家 어느 事業 못지않게 重要
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람
직한 保健事業이 學校에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으로 政府를 為始하여 國民各階各層을
莫論하고 모름지기 一大覺醒을 하여야 될
줄 믿는다.

무릇 어찌한 國家事業의 成功도 健全하고 果
敢性 있는 行政力이 있어야 함과 같이 學校 保健
事業도 効果的으로 遂行되려면 學校와 關係되는
爲政者로부터 教育行政機關은勿論 學校에 이르
기까지 學校 保健事業에 있어서 健康이 重要함을
再認識하고 果敢히 反映 實踐하여야 한다고 본
다.

첫째, 教職員 및 保健要員은 渾然一體가 되어
야 한다.

學校 保健의 3大根幹 즉,

- ① 健康教育(理論面學習)
- ② 健康指導(生活의 實踐面)
- ③ 健康管理(對策과 研究)를 効果的으로 遂行
하기 위하여는 學校長 以下 全教職員과 學校

保健要員(校醫, 齒科醫師, 學校藥師, 養護教師)
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施行할 때 바람직한
學校 保健事業이 이루어 진다고 하겠다.

둘째, 學校마다 養護教師를 두어야 한다.

學校 保健要員 가운데 養護教師는 直接 學生들과
같이 學校에서 生活하며 그들의 養護를 擔當하고
學生 健康管理를 指導하는 核心的 存在이며
各級 學校의 養護教師 配置狀況을 살펴 보면 全國
國民學校 6,074個 學校에 養護教師 727명
및 養護講師(臨時職) 292명이 配置되었고, 中學校
1,900校 중 養護教師 131명 및 養護講師 131
명, 高等學校 1,147校 중 養護教師 128명과 養
護講師 334명(養護兼職 教師는 例外하였음)이
配置되어 우리 나라 全體初, 中, 高等學校 중
不過 13%에 該當되는 學校에 限하여 配置된 實
情임으로 마땅히 是正되어야 할 緊急하고 重大
한 課題로 생각된다.

따라서 各級 學校에서는 養護教師를 採用 配置
하여야만 하는 關係 法規를 拔萃하여 보기로 한
다.

1. 學校保健法 第15條(學校校醫,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
生 및 教職員의 保健 management를 담당하는 學校校醫
(齒科醫師를 포함한다)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를

둔다.

2. 學校保健法 施行令 第6條(학교 교의, 학교 약사 및 양호교사)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 교의(처과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 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① 18學級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학교 교의 1인, 학교 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 교의 또는 학교 약사 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②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 교의 1인, 학교 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 교의 또는 학교 약사 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③ 大學(大學에 있어서는 單科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에는 학교 교의 1인 및 학교 약사 1인을 둔다.

④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 학교에도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 교의, 학교 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의, 학교 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3. 關係教育法

1) 教育法施行令 第38條(양호교사) 18學級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 이상을 둔다. 그러나 무의총에 있어서는 18學級 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同施行令 第40條(教員)

① 중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1인 반 이상의 비율로 이를 증치한다.

② 전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증치한다.

③ 특수한 기술을 담당하는 교사(이하 특수교

사라 칭한다)와 양호교사는 전 2항의 정원 외에 이를 둘 수 있다.

3) 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원)

① ②항 省略

③ 특수교사와 양호교사는 전 각항의 정원 외에 이를 둘 수 있다.

4. 學校 保健關係 職員의 職務에 關한 規則

第5條(養護教師의 職務) 각項은 省略하고 主要職務를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 學校 保健管理 計劃의 樹立, 補助

△ 環境衛生 檢查 協力

△ 學生 및 教職員의 健康診斷의 準備 및 그 實施를 補助

△ 應急患者 및 事故者의 救急看護와 措置를 擔當

△ 校內에서 實施하는 各種 身體檢查 등 保健管理를 擔當

△ 學校 및 教職員의 健康觀察 學校醫와 健康相談 및 保健指導, 學校保健, 衛生管理를 위한 必要事項을 擔當한다로 되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學校 保健遂行에 있어 養護教師 職務의 重要性과 關係 法規를 볼 때 嘘는 感이 있으나 하루 속히 學校마다 正規 養護教師를 配置하는 問題야 말로 가장 時急한 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昨今의 報道에 依하면 慶尙南道 教育委員會에서는 校長, 校監先生에게도 授業을 맡겨 人力活用으로 新規採用 教師를 줄이며 따라서 豫算節約을 期할 수 있으므로 缺員된 養護教師 등을 採用한다는 報道를 보고 養護教師 配置를 重要視한데 대하여 學校 保健領域의 一角에서 그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筆者로서는 讚辭를 보내 마지 않는 바이며 要컨대 學校 保健의 重要性을 再認識하고 果敢히 實踐한다는 마음 가짐에 있다고 본다.

바라건대, 하루 빨리 全國의 各級 學校에 正規 養護教師가 配置되어 學校 保健에 寄與있기를 바란다.